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청약서

중소기업중앙회 앞

가입번호

□ 업체현황

업 체 명		대표자		휴대전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사무소 (본사)	우편번호()			Tel. () Fax. ()
	사 업 장 (공장,지점)	우편번호()			Tel. () Fax. ()
	대 표 자 (자택)	우편번호()			Tel. () Fax. () e-mail :
업태		종업원수	명	업체 담당자 (직 위)	소속조합
종목(주생산품)		자산총액	백만원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업개시일		자본총액	백만원	휴대전화	e-mail
		연매출액	백만원		

□ 청약현황

청약금 (부금월액)	만원	부금 납부기간	년	청약일	일	■ 월부금액 : 10~300만원 (10만원 단위) ■ 부금 납부기간 : 3년, 4년, 5년 중 택1 ※ 청약일 및 자동이체 희망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 처리 됨
				자동이체 (희망)일	일	
예금계좌 자동이체 지정·신청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1. 본인은 위의 예금계좌를 통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공제부금의 납부, 대출금 및 이자의 상환, 위약금 및 연체이자등의 납부를 귀회의 거래예금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2. 자동이체신청에 의한 출금은 귀회의 청구대로 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귀회와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3. 위 예금계좌자동이체신청에 의하여 납부한 부금 금액에 대하여는 중앙회 발행의 영수증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 충분히 [설명을 들었음]		
약관의 주요 내용						
[지연된 부금의 납부] ◆ 부금납부가 지연된 경우 지연된 부금납부일을 부금납입일로 하며 그 지연된 부금액은 당초 납부일로부터 지연된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다시 경과되지 아니하면 대출한도 산정기준이 되는 부금납부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 ◆ 1. 본회는 공제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며, 이자율은 공제기금 운용상황을 감안하여 본회가 정하며 다만, 부금 납부회차가 12회 미만인 때에는 납부한 부금원금만을 지급합니다. 2. 본회가 공제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상환 및 납부받아야 할 공제대출금 및 이자의 미상환금, 위약금, 연체이자, 채권 회수비용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당해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합니다. [장려금] ◆ 공제부금이 만기된 경우 만기일 이후부터 분기별로 소정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단, 만기부금 증액시에는 증액신청한 만기부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제금 대출조건] ◆ 공제금대출은 공제기금 규정에 따라 업체의 매출액, 담보제공,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의 대출조건을 달리 적용합니다. [공제금대출제한] ◆ 본회는 공제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공제금 대출을 제한합니다. 1. 공제계약자의 부금납부회차가 2회 미만이고 부금납부기간이 만 1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공제계약자가 대출일 현재 부금의 납부를 지연하고 있을 때 3. 공제계약자가 공제부금납부를 계속하여 3회 이상 지연한 후, 지연된 부금을 납부한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때 4. 공제계약체결전 대출사유(거래처도산 등)가 발생하였거나 도산 등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경과시(1호대출) 5. 기타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충분히 [설명을 들었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귀회와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공제계약체결)에 있어서 중소기업공제계약 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숙지한 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을 청약합니다.

년 월 일

청 약 자(대표자)

(인)

가입유치자명	소 속	휴대폰
--------	-----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 귀중

귀 회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의거 귀 회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공제기금(금융)거래라 함은 공제기금(금융기관) 가입·부금납부·공제금대출·대출사후관리·채권회수 등의 공제기금(금융) 업무와 공제기금(금융) 거래와 관련한 부수업무(금융정보, 신용정보, 신용조회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필 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공제기금(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및 공제기금(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 공제기금(금융) 제도변경 통지,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민원 처리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단, 지원이 있을 경우에 한함) ■ 공제부금 납부, 공제금의 지급, 공제금 대출 등 공제 계약관련 제반 업무처리
수집·이용 항목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 개인식별정보 : 국내거소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국적, 계좌번호, 직업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수집정보(고객ID, 접속 일시, IP 주소등) ■ 기업정보 :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업종, 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를 활용(단, 활용 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수출액에 한함) ■ 신용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연매출, 납세실적, 담보현황(담보대출에 한함),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직장명, 근무부서, 직위, 사업자번호 등)은 신용평가 필수 상품에 한해 수집합니다.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 공공정보 : 체납정보(국세·지방세 등), 회생·파산·면책정보, 신용회복지원정보, 개인신용평점 등 신용정보 주체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
보유·이용 기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공제기금(금융)거래 종료 후 5년까지 보유·이용 됩니다. 단, 공제기금(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본회의 리스크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단,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이차보전 등)사업 참여기업 정보는 사업참여이전 3개년부터 참여이후 5년간 수집·보유·이용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귀 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귀 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필 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계약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위한 관련기관 및 업무수탁업체에 대한 제공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법령상 의무이행이나 이차보전지원을 위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고객센터 외주업체, 전자문서 보관업체, 우편·문자발송대행업체, 팩스통신 솔루션 업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업체수탁업체, 채권추심업체 등 * 중앙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며, ‘개인(신용)정보와 관련된 위탁현황’ 상세내역은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와 공제기금 홈페이지(fund.kbiz.or.kr)의 신용정보활용체계 메뉴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제공 목적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수행 ■ 신용정보회사: 본인의 신용판단 및 본인확인 등 법령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수행 ■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보증서대출 등 관련 상품에 한해 조회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법령상 의무이행, 이차보전지원사업 관련 업무 수행 ■ 고객센터, 전자문서보관 위탁업체: 본인확인, 상담업무, 제도안내, 전자화문서 보관업무 수행 ■ 우편·문자발송대행업체, 팩스통신 솔루션 업체: 거래 관련 우편, 팩스, 문자메세지전송 업무 수행 ■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업체: 시스템 개선, 개발,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 ■ 채권추심 : 기한이익상실 사유 등 발생시 채권추심 업무 수행
제공 항목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국적, 직업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수집정보(고객ID, 접속 일시, IP 주소등) ■ 기업정보 :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업종, 주소 ■ 신용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연매출, 납세현황(담보대출에 한함), 직업정보(직장명, 근무부서, 직위 등)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대표자(본인)성명 :

서명 또는 (인)

1/2페이지

제공 기간	본회의 조회 결과 귀하와의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제공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본회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지하시면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귀 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귀 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필 수)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기관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사)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NICE신용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 법령상 의무이행 : 법원, 국세청 및 각급세무서 등 정부기관
조회목적	본회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 판단
조회 동의의 유효기간	조회 결과 귀하 또는 귀하가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지하시면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조회 항목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 개인식별정보 : 국내거소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국적, 직업 ■ 기업정보 :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업종, 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 신용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담보현황(담보대출에 한함),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직장명, 근무부서, 직위, 사업자번호 등)은 신용평가 필수 상품에 한해 조회합니다.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 공공정보 : 체납정보(국세·지방세 등), 회생·파산·면책정보, 신용회복지원정보, 개인신용평점 등 신용정보 주체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 ■ 개인사업자 정보 : (개인사업자에 한함)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휴폐업 등급, 매출액 추정정보 등
귀 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귀 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선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귀하는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경영정보 등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안내, 사은행사 등 본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목 적	항 목	보유기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제106조에 의하여 중앙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조사, 가입권유, 고객만족도 조사 등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기업정보 :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업종 및 업태, 개업일, 폐업일,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계약 종료일* 후 최대 3개월 또는 동의 철회 시까지 *계약 종료일이란 공제기금 계약을 해지한 날을 뜻함

(선택) 귀 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목 적	항 목	보유기간
■ 홍보 및 조사, 가입권유,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위한 업무수탁업체	중앙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조사, 가입권유, 고객만족도 조사 등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개업일, 업체 연락처 등	계약 종료일* 후 최대 3개월 또는 동의 철회 시까지 *계약 종료일이란 공제기금 계약을 해지한 날을 뜻함

(선택) 귀 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본인의 기업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업 체 명 :	■ 대표자(본인)성명 :	서명 또는 (인)	2/2페이지
-----------	---------------	-----------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청약자 필수 확인 사항

중소기업중앙회 귀하

당사(본인)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귀회와의 공제계약 청약 전에 부금납부, 해지, 대출조건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중소기업이 상호부조 정신에 따라 부금을 납부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동 재원으로 상거래로 받은 어음, 매출채권 등의 부도로 인한 자금난, 일시적 자금조달난, 어음·수표 및 외상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 곤란 등의 경우에 대출을 통해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 공제부금

○ 월부금액 및 납부기간 (매월납부) *부금납부 최고금액 1억8천만원

월부금액	납부기간	비 고
10~300만원 (10만원 단위)	3년/4년/5년	계약 도중 납부기간 연장 가능

* 납부기간 종료일 후 1개월이 지나면 만기일이 됨

** 월부금액 증액과 감액은 가능. 다만, 직전 월부금액의 1/2이하 감액은 불가능함

○ 해지환급금 : 공제계약의 해지 시 납부한 납부잔액에 해지이자를 더하여 지급

○ 부금해지 이자율 : 만기일 후 해지시에는 만기이자율 적용, 만기일 전 해지시에는 중도이자율 적용

- 만기이자율 : 부금 납부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청약일 당시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만기이자율로 적용함

- 중도이자율 : 만기 이전 해지시, 부금납부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청약일 당시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중도이자율을 적용함

○ 장려금 지급률 : 만기일 이후 부금잔액에 대해 지급률을 적용한 산출금액을 만기 후 매분기마다 지급

* 장려금 지급률을 기금운용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의 만기 이후 지급 시점에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지급률을 적용

□ 공제금대출

○ 대출 신청자격 : 공제기금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2회차 이상 납부하고 만 1개월이 경과한 자

○ 대출 신청사유

▷ 부도매출채권대출 : 거래상대방의 부도 및 폐업·법정관리 등의 사유로 받은 어음,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의 회수가 곤란한 때

* 가입전 사유(거래처도산 등) 발생 채권은 대출대상이 아니며, 도산 등의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 신청하여야 함

▷ 어음·수표대출 : 상거래로 받은 상업·전자어음 및 수표를 조기 현금화하고자 하는 경우

▷ 단기운영자금대출 : 일시적으로 단기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 대출 제한사항

▷ 공제부금 납부를 계속하여 3회 이상 지연한 후에 지연된 부금을 납부한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때

▷ 공제계약 체결 이전의 상거래와 관련한 매출채권과 관련한 대출인 때

▷ 대출대상인 어음·수표와 매출채권의 결제기일이 대출실행일부터 180일을 초과할 때

▷ 대출일 현재 부금의 납부를 지연하고 있을 때

▷ 대출일 현재 대출중인 대출금 및 이자의 상환이 연체 중일 때

▷ 대출일 현재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정보·부도정보·금융질서문란 정보 등이 등록 중일 때

▷ 기타 공제기금 건전한 운영관리를 위해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 대출조건

대 출 종 류	대 출 금 리	대 출 기 간	대 출 한 도		
			신용 대출 (신용등급별 적등)	담보 대출	지역신용 보증서
부도매출채권대출	무이자 *대손준비금 10%공제	3년 (6개월 거치, 30회 분할상환)	부금잔액의 1배 ~ 7배	부금 잔액의 10배 이내	-
어음수표대출	공제기금 홈페이지 공시 참조	180일 이내(지급기일)	부금잔액의 1배 ~ 7배		부금 잔액의 2배~5배
단기운영자금대출	공제기금 홈페이지 공시 참조	1년	부금잔액의 1배 ~ 3배		

* 대출금리와 대출한도는 신용평가에 의한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금 조기상환시 중도수수료 없음

** 대출금리, 기간 및 한도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대출기간 만료일전 대출금 상환 의무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

- ▷ 대출금 이자의 납부일로부터 계속하여 30일 이상 지체한 때
- ▷ 대출금 상환일까지 대출금을 상환을 지체한 때
- ▷ 공제부금에 대한 압류가 있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 질권설정, 담보제공하였을 때
- ▷ 계속하여 3회 이상 부금의 납부를 지체한 때
- ▷ 채무자가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정보·부도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이 등록 중일 때
- ▷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해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 ▷ 채무자가 금융기관의 지급정지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 ▷ 채무자가 파산·회생·청산·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신청하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결정 되었을 때

○ 지역별 문의처 (2024년 4월 기준)

지역 소재지		전화번호	지역 소재지		전화번호
서울 지역	여의도(본부)	02-2124-4325~9	대구 · 경북 지	대 구	053-524-2506
	상 암	02-2124-4375		경 북	054-654-2225
인천 · 경기 지	인 천	032-437-8706	전북 · 전남 지	전 주	063-214-6608
	부 천	032-326-2431		광 주	062-955-0037
	수 원	031-254-4835	충북 · 충남 지	청 주	043-236-7082
	의정부	031-851-0164		대 전	042-864-0910
	안 산	031-492-2575		천 안	041-622-3823
	부 산	051-861-9376	강 원 지 역	춘 천	033-241-0013
부산 · 경남 지	울 산	052-283-4323	제 주 지 역	제 주	064-758-8580
	창 원	055-281-2303	콜 센 터 : 1 6 6 8 - 3 9 8 4		

* 최신 현황은 공제기금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 : <http://fund.kbiz.or.kr>